수능 물리 오답 논란 확산 수험생 집단소송 빚을 듯

교육평가원은 "이상없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과목의 한 문항에 대해 22일 한국물리학회가 '복수정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문항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수능출제를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상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물리학회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평가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 '물리 II 11번' 논란 이유는=물리 II 11번은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이를 설명하는 예시문 3개를 제시한 뒤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3점짜리 객관식이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이 문제에서 이상기체를 언급하면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기체는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이 되는데 문제에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게 물리학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상기체를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하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게 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 수험생 반발=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사태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원자 분자 개념까지 고려해 이 문제를 풀었다가 틀린 학생이라면 이미 결과가 발표된 수시전형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정시전형에서 일정부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상이 속출한 만큼 이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 경우라면 수험생들의 불만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입시기관들이 예측한 물리 II 과목의 1등급 구분점수(커트라인)은 47점이었으며 이에 따라 물리 II에서 2문제 이상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다. /연합뉴스

상위권, 대입 정시 소신지원 뚜렷

서울대 경쟁률 4.82 대 1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소신지원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2일 끝난 서울대 정시모집 접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입시의 경쟁률은 지난해 4.13대1보다 0.69%포인트 증가한 4.82대1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앙유웨이교육에 따르면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 지원경향'은 ▲자연계열 학과의 경쟁률 상승 ▲사범계열 학과들의 경쟁률 상승 ▲최상위권 학과의 소신지원 등으로 집약된다.

자연계열 학과 중 건설환경공학부(8.16대1), 농경제사회학부(6.79대1), 지구환경과학부(6대1) 등은 6대1을 넘어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무색케 하는 결과로 등급제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범대 사회교육계열(6.23대1), 과학교육계열(6.23대1), 수학교육학과(4.33대1)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접수 마감일(22일) 오후 3시 서울대가 공식 발표한 경쟁률보다 급격히 늘어난 숫자여서 마지막 눈치작전이 치열했음을 보여줬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습실에서 KAIST에 합격한 2학년 학생들이 대학수업에 대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KAIST 개혁 여파 과학고 '열공' 후끈

〈열심히 공부〉

영어 100% 강의, 수업료 감면도 성적순…입시 끝났지만 "더 열심"

광주·전남과학고에 KAIST 서남표 총장의 개혁정책 후폭풍이 불고 있다.

광주시 남구 광주과학고등학교 2학년 특화반 교실은 KAIST와 일반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예비대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로부터 매일 영어회화 수업을 받고 있다. 예전같으면 11월 중순 진로가 확정되면서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학생들이지만, 입시 전보다 공부 열기가 뜨겁다. 지난 7월 취임한 서남표 총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면제됐던 수업료를 학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모든 강의는 100% 영어로 진행하겠다는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생겨난 신풍경이다.

매년 20~30명의 학생이 KAIST에 들어가는 광주과학고도 초강수 개혁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61명의 2학년 학생 중 23명(전체 28명 합격)이 KAIST 수시전형으로 합격을 하면서 11월 중순부터 조기졸업자들과 3학년 진급자를 나눠 특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에는 대학 전공과정에서 필요한 수학·과학 등의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영어회화·컴퓨터 집중교육을 하면서 대학수업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KAIST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 선배들의 성적이 신입생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맞춤형 교육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KAIST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서 총장의 일침에 창의력·발표력·리더십 등이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2009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인성교육'이 한창이다. KAIST 측은 이번 신입생부터 인성·전문성 합격자로 분리해 선발하면서 영어 개인면접은 물론 5~6명이 한 조가 되어 작성한 연구논문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면접과정에서 따지며 개인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광주과학고 김우종(58) 교장은 "그동안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일반 교육과정에 치중했지만 KAIST의 바뀐 입시정책에 따라 발표·토의능력 등 '인성교육'에도 나서야 해 교과과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 2학년 학생 19명이 KAIST에 합격한 전남과학고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합격자들은 심야토론 학습을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진행하고, 전공수업과 영어회화 수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일부 학생들은 KAIST에서 주관하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해 캐나다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났다.

KAIST에 수시합격한 광주과학고 최하얀(17)양은 입학 후 수업에 대비, 원어민 선생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방과 후에는 컴퓨터 학원에서 자바(Java)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다.

최양은 "입학 후에도 KAIST 방침에 맞춰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만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포근한 X-mas 이브

12월 24일 (음 11월 15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리겠다.

광 주	구름 많음	0~10℃
목 포	차차 흐려짐	3~9℃
여 수	차차 흐려짐	4~11℃
완 도	차차 흐려짐	3~11℃
구 례	구름 많음	-3~10℃
해 남	차차 흐려짐	-1~11℃
장 흥	차차 흐려짐	0~11℃
고 흥	차차 흐려짐	-1~11℃
순 천	차차 흐려짐	-3~11℃
영 광	구름 많음	0~9℃
진 도	차차 흐려짐	2~11℃
전 주	구름 조금	-2~8℃
남 원	구름 많음	-4~9℃
흑산도	차차 흐려짐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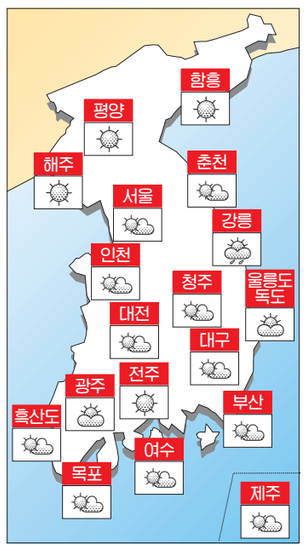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 포 밀물 01:31 14:31 썰물 07:04 19:54
여 수 밀물 09:20 21:21 썰물 02:38 15:28

▲해뜸 07:38 ▲해짐 17:25 ▲달뜸 17:26 ▲달짐 07: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날 씨						
최저/최고	3/9	1/11	2/10	4/8	0/4	-2/2

호적 성씨 유→류 변경 3개월간 2천여명 신청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羅(라)·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 지 석 달 만에 유씨 2천여 명이 류씨로 변경해 달라는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예규를 8월1일 시행한 뒤 10월31일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柳(류)씨 2천45명, 羅(라)씨 50명, 李(리)씨 15명 등 모두 2천110건이다.

'류·라·리'씨 등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音價)대로 성을 발음하고, 사용해 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 호적의 한글표기 정정이 허용된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도 초과땐 돌려줘야"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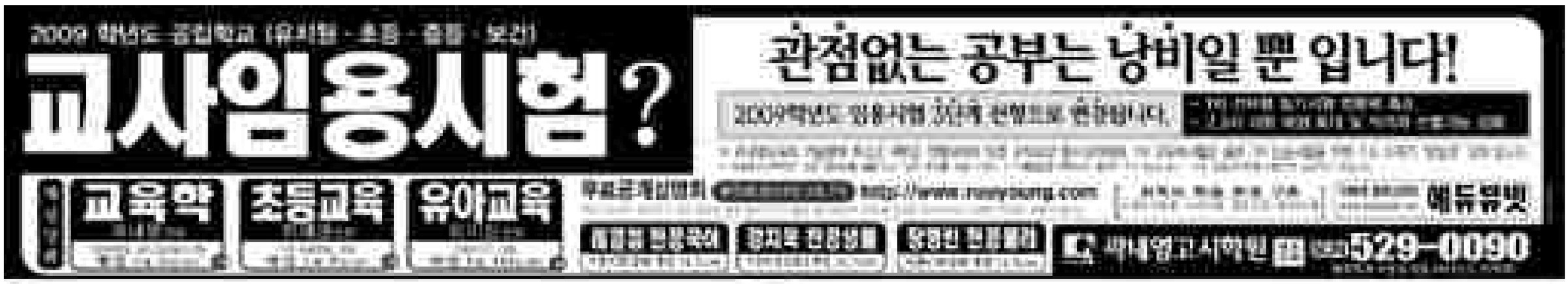
대법원은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하는 한편, 이와 다른 취지의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